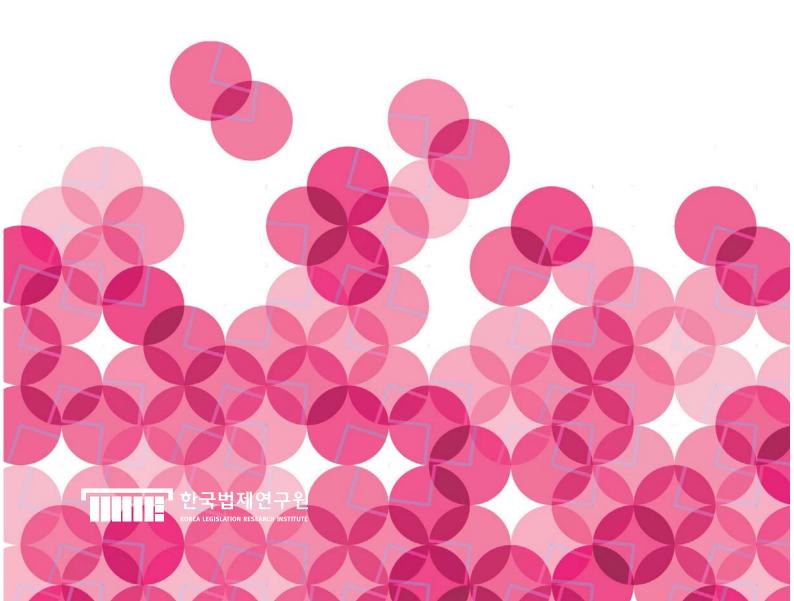
# 제 5 차 기후변화법제포럼

2014. 8. 8.



# 제 5 차 기후변화법제포럼

2014. 8. 8.



### 일 정

### □ 개 요

○ 일 시 : 2014년 8월 8일(금) 12:00~15:30

○ 장소 : 프레지던트 호텔(산호홀)

O 참석자:

○ 원 외

- 김해룡(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, 유종민(자본시장연구원), 한기주(산업연구원), 오형나(경희대학교 국제학과), 최광림(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), 류권홍,(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, 김명수(KDB산업은행경제연구소), 김성균, 정윤경, 이상준(이상 에너지경제연구원), 이상엽, 채여라(이상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), 이상신(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)

### ○ 원 내

- 이준서, 홍의표, 김은정, 박기령, 장은혜, 정지경, 이승빈 (이상 한국법제연구원 사회문화법제연구실)

### □ 세부일정

시 간	구 분	내 <del>용</del>
12:00~13:00	검토회의	<ul><li>▶ 제4차 포럼 논의 정리</li><li>▶ 중 식</li></ul>
13:00~13:35	제 1 세션	▶배출권 시장 안정화 정책의 분석 -중앙은행 모델을 중심으로 - 유종민 (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)
13:35~14:00		▶ 세션 토론

# 일 정

시 간	구 분	내 용
14:00~14:35	제 2 세션	▶기후변화협상 동향 및 전망 -신기후체제 협상 중심으로 - 정윤경 (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)
14:35~15:00		▶ 세션 토론
15:00~15:20		▶ 종합 토론
15:30	폐 회	

# 목 차

【제 1 세션】
◎ 배출권 시장 안정화 정책의 분석-중앙은행 모델을 중심으로
발표자 : 유 종 민 (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)
【제 2 세션】
◎ 기후변화협상 동향 및 전망-신기후체제 협상 중심으로
발표자 : 정 윤 경 (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) 33

# 제 1 세션

배출권시장 안정화 정책의 분석-중앙은행 모델을 중심으로

발표자 : 유종민 (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)

# #출권 시장 안정화 정책의 분석 -중앙은행 모델을 중심으로2014. 08.08. 자본시장연구원 연 구 위 원 유 종 민 yucono@kcmi.re.kr

# **Agenda**

- 1 서론
- 2 배출권 거래제의 배경 및 현황
- 3 배출권 시장의 유동성 조절기구에 대한 고찰
- 4 한계 및 시사점



1. 서론



# 서론: 연구 배경

- ❖ 2012년 5월『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』 (이하 "배출권거래제법")이 제정됨
  - 2012년 12월 배출권거래법 시행령이 국무회의 통과 → 2015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
- ❖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2020년의 배출전망치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30%까지 감축할 것이라고 국제사회에 공약
  - Bloomberg는 한국의 감축 목표는 매우 야심찬 수준이라고 평가함

지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

# 서론: 연구 배경

- ❖ 유럽연합에서 겪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의 오랜 침체
  - 수차례 관찰된 시장가격의 폭락
  - 규제에 순응하는 비용에 대한 예측이 어려움
  - 저탄소 생산기술에 대한 투자유인 상실
- ❖ 유럽과 같은 심각한 배출권 가격의 급등락을 막을 운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제기
- ❖ 최근 논의되고 있는 탄소배출권의 화폐로서의 성격 논의
  - Brunner et al(2012), Button(2008), Garnaut(2011), Helm et al(2003)
  - 국내에 배출권 시장에의 중앙은행 시스템 도입은 처음 소개
  - 우리나라의 사정에 맞춘 정책수립 시사점을 제시

4



# 서론: 주요 분석 요약

- ❖ 배출권 시장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
  - ▶ Fixed price, 가격 상하한제, 일회적 배출권 총량 조정, 이월 차입 조절
- ❖ 정책 수단을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기준
  - 장단기 가격 지지 효과, 기업 경쟁력 및 재정에의 영향, 시장 개입의 신속성
  - 여러 해외 연구에서 Carbon Central Banking 시스템이 우수하다고 분석
- ❖ 배출권 시장에의 통화정책의 적용
  - 환경의 유사성: 동태적 불일치성 및 톱니바퀴 효과, 투자의 옵션가치
  - 배출권의 재산적 가치, 기존 일반상품들과의 상이점
  - 통화정책과 유사한 형태의 상충되는 목표와 정책수단
- ❖ 적용 한계와 시사점

자본시장연구원
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

# 2. 배출권 거래제의 배경 및 현황



# 배출권 거래제의 배경 및 현황

### ❖ 온실가스 저감정책 비교

	직접규제책	시장유인책		
	목표관리제	고정세율	배출권 거래제	
장점	정책의 편의성과 효과성	예측 가능한 규제 순응 비용	실현될 배출 총량에 대한 확실성	
단점	-자발적 감축노력유도 부족 -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정확 한 규제 어려움	-실현될 배출총량에 대한 불확실성 - 적시 세율 조정의 어려움	지나친 가격변동성	

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



# 배출권 거래제의 배경 및 현황

### ❖ 유럽 탄소배출권 시장: 현재 3기를 운용 중

- 17|(2005~2007), 27|(2008~2012), 37|(2013~2020)
- 참여국: 오스트리아, 벨기에, 사이프러스, 체코, 독일, 덴마크, 에스토니아, 스페인, 핀란드, 프랑스, 그리스, 헝가리, 이탈리아, 리투아니아, 룩셈부르크, 라트비아, 네덜란드, 폴란드, 포르투갈, 스웨덴, 슬로베니아, 영국 등
- 1기의 폭락: 공급과잉으로 인한 폭락
- 2기의 폭락: 재정위기와 미국의 금융위기

### ❖ 호주: 2011년 탄소배출권 시장 출범

- 1기(2012~2015)는 시범운영기간
- 2기(2015~2018)는 자율적이나 가격의 상하한을 정부가 결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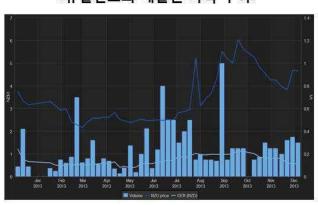
지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

# 배출권 거래제의 배경 및 현황

### ❖ 뉴질랜드의 배출권 거래제도

- ▶ 자율적인 가격형성
- 배출권의 가격상한을 정해놓았음

### <뉴질랜드의 배출권 가격 추이>



자료: Point Carbon

1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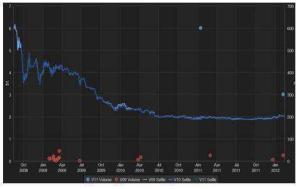


# 배출권 거래제의 배경 및 현황

### ❖ 미국의 배출권 거래제도

- 국가차원의 배출권 제도가 2009년 상원에서 최종 부결
- 지역단위의 배출권 제도는 활발히 운영되고 있음
  - RGGI(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)프로그램, 캘리포니아

### <미국 RGGI 배출권 가격 추이>



자료: Point Carbon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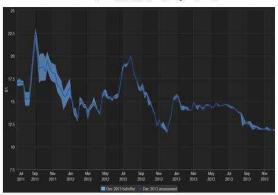


# 배출권 거래제의 배경 및 현황

### ❖ 캐나다와 미국의 캘리포니아가 참여하는 배출권 제도 WCI

- 2011년 출범하였음
- 캐나다의 퀘벡, 브리티시 콜롬비아, 미국의 캘리포니아 등이 참여
- 국가 간 배출권 제도의 결합이 실제로 정책에 적용된 첫 사례

### <WCI의 배출권 가격 추이>



자료: Point Carbon

12



# 배출권 거래제의 배경 및 현황

### ❖ 중국: 지역단위의 거래제 운영

- 베이징, 톈진, 상하이 등 도시단위 시범지구
- 광둥, 쓰촨 등 주단위의 배출권 제도
- 규모 면에서 타 국가를 압도
- ▶ 텐진 지역의 시장규모는 스위스 거래제를 능가
- 국가단위의 배출권제도 창설(2015년 목표)을 위해 ADB, WorldBank 등과 협력 중

### ❖ 일본: 도쿄도 지역의 운영

- 도쿄상품거래소 산하에 독립적 거래소를 설립
- 2005년부터 배출권 매매를 시행 중
- 2010~2019년까지 약 6%의 배출상한의 축소를 목표
- 게이단렌 중심의 조직적 반대에 직면 → 고정세율 체제 선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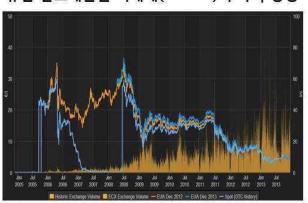
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

# 배출권 시장의 안정화 방안

### ❖ 시장 구조적 측면에서의 결함이 변동성을 증가시킴

- 공급 측면이 미리 결정됨: 도쿄의정서의 감축의무 달성 및 지구 온난화라는 정책목표 달성
- 고정된 배출권 공급 → 비탄력적 공급곡선 → 작은 수요 측면의 충격에도 큰 반응
- 배출권의 이월과 차입제도(banking & borrowing): 충격 흡수에는 역부족

### <유럽 탄소배출권 거래제(EU-ETS)의 가격 동향>



자료: Point Carbon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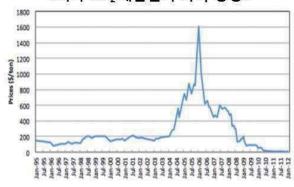
14

# 배출권 시장의 안정화 방안

### ❖ SO<sub>2</sub> 배출권 시장: 정책리스크 & 자연재해로 인한 변동성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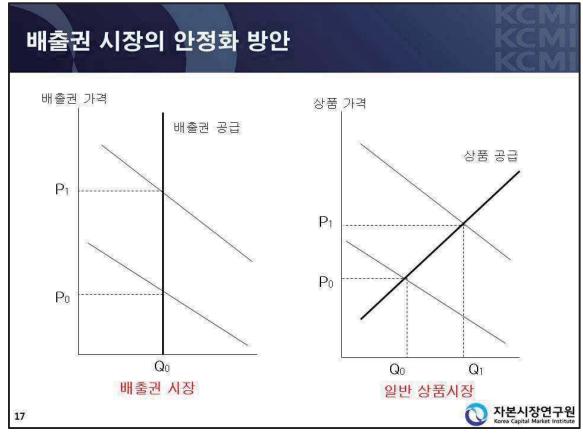
- 2005년 미국 환경부의 주간청정대기규칙(CAIR)
- 2005년 8월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가스관 운반시설 파괴
-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CAIR에 대한 위헌소송 제기

### <미국 SO<sub>2</sub> 배출권의 가격 동향>



자료: Power & Energy Analytic Resources (PEAR)

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



# 배출권 시장의 안정화 방안: 가격통제정책

### ❖ 가격상한(price ceiling)

- 경기과열 또는 허리케인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가격급등은 규제대상기관의 비용부담상승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를 초래
- 시장가격이 정해놓은 상한에 도달하면 배출권을 정부로부터 상한가격에 무제한 매입 가능
- 단점: 가격상한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될 경우 무제한 구입이 가능해 배출총량이 예상보다 과다하게 될 가능성 존재(가격 규제만 가능, 양적 규제는 불가능)

### ❖ 가격하한(price floor)

- ▶ 가격이 지나치게 수준 이하로 하락 시 정부가 무제한 매입해줌
- 장점: 피규제기관들이 지속적으로 배출권 구입에 대한 부담을 지게하는 효과 및 감축허용량을 줄임으로써 감축목표달성이 용이
- 단점: 정부가 무제한으로 배출권을 흡수해야 함으로 재정부담이 발생

### ❖ 상하한 가격(price collar)

■ 밴드설정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상이

18



### 배출권 시장의 안정화 방안: 유동성 조절 정책

### ❖ 배출권의 이월과 차입(banking & borrowing)

- 🏴 유럽연합, 미국의 캘리포니아, 호주 등의 대부분 시장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
- 이월은 허용되며 차입은 제한적으로 가능

### ❖ 상쇄권 허용한도의 조절

 정부로부터 발급되는 배출권 이외에 프로젝트에서 발생되는 배출권리인 상 쇄권을 사용할 수 있는 허용량을 조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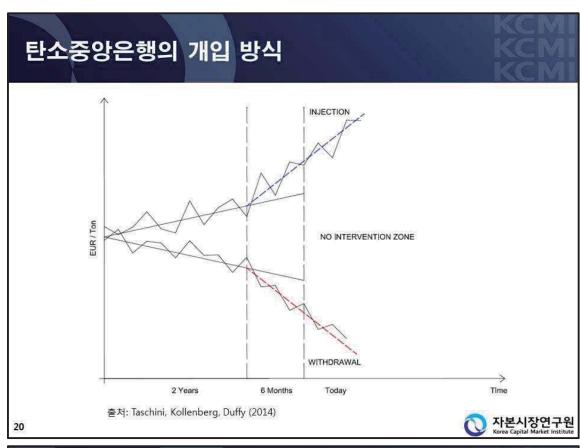
### ❖ 일회성 배출권 총량 조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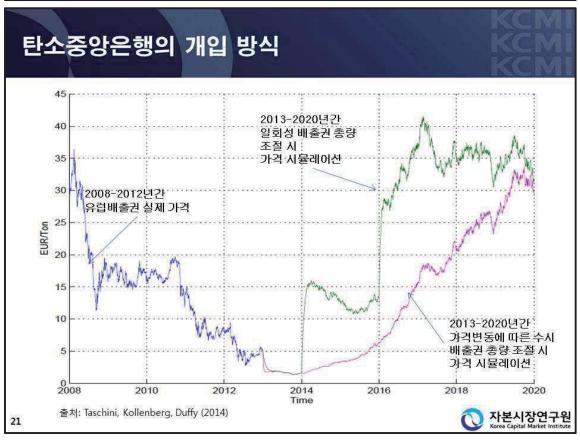
■ 시장교란 및 기존 참가자의 금전적 손실 가능성

### ❖ 배출권 조절의 중앙은행식 모델

- 대부분의 경우 배출권 예비분(reserve)을 운영
- 독일의 경우 독일연방개발은행이 시장에 직접 개입 가능

자본시장연구원
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





# 배출권 시장의 안정화 방안: 국가 간 비교

### <주요국가의 배출권 시장 세부 운영>

국가	채택 방안
유럽	- 무제한 이월 허용 & 1년치 후년도 발행량 차입 허용 - 100 유로/톤 의 벌금
호주	- 무제한 이월 허용 & 후년도 발행량의 10% 차입 허용 - 가격상한(20 호주달러/톤)과 하한(15 호주달러/톤)
미국 (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)	- 무제한 이월 허용 - 가격상한 이상의 시장가격 형성 시 상쇄권의 공급 확대
미국과 캐나다 (캘리포니아 + 퀘백)	- 무제한 이월 허용 - 가격상한 이상의 시장가격 형성 시 후년도 발행량 차입 허용 - 가격하한에서부터 경매를 통한 유동성 공급
미국 Waxman Markey 법안	- 무제한 이월 허용 - 징벌적 이자율을 적용하는 후년도 발행량 차입 허용 - 가격상한 이상의 시장가격 형성 시 상쇄권의 공급 확대 - 가격하한에서부터 경매를 통한 유동성 공급

자료: Sustainable prosperity (2011)

22



# 배출권 시장의 안정화 방안: 제도 간 비교

	**	정의	사례적용	장점	단점
직접적 가격통제	상한가격	배출권을 특정가격부턴 정부로부터 무제한 공급	허리케인 카트리나와 미국의 SO2시장	의도하지 않은 환경규제 강 화를 방지	배출 총량 과다 가능성
	하한가격	배출권을 특정가격으로 무제한으 로 매입	2~37  EU-ETS	배출권 구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 유지	재정적 부담
	상한가격 (Price collar)	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모두 제한		상한과 하한가격제의 장단점	을 모두 가지고 있음
2000	이울 및 차입	이월: 이번 기에 배출권을 사용하지 않고 다음 기 사용을 위해 저장 자입: 이번 기에 사용할 배출권이 부족할 경우 다음기의 배출권을 미리 빌려 사용	17  EU-ETS	가격 움직임 예상에 따라 배출권 사용 조절 가능	이월 혹은 자입된 배출권 의 쏠림현상
유동성 조절을	Offsets 허용한도 조정	프로젝트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발행되는 배출 허용 권리권	모든 배출권 시장에서 적 용 중	추가적인 상쇄권 구입을 통해 서 배출권 배출저감비용 절약	국내 인정비율의 불확실성
조설날 통한 간접적 가격조정	일시적 총량조정	배출권 시장에서의 일시적 할당 유보 및 추가		유동성 조절을 통해 간접적 으로 가격지표가 원하는 방 향으로 관리 가능	항구적 방식에 비해, 효율 적 시장에서는 효과 크지 않음
	항구적 총량조정	배출권 시장에서의 일회적이지만 항구적인 할당취소 및 추가	37  EU-ETS		정책 신뢰성 저하
	Central banking	매매에 직접 참여함으로서 시장가 격에 대한 스무딩오퍼레이션 (scooting operation) 수행		0-4 27/10	과도한 시장개입 가능성



# 국내 배출권 거래제 세부 운영 계획

### ❖ 시장 안정화 조치

- 배출권거래제법 23조, 시행령 30조
- 조건: 6개월 연속으로 직전 2개 연도 평균가에 3배 이상, 거래 급증, 공익 목적

### ❖ 가격통제정책

- 일시적 최고 혹은 최저 매매가격 설정
- 과징금 상한: 톤당 10만원 한도 내 직전 3개월 평균 가격의 3배

### ❖ 유동성 조절정책

- 업체별 보유 최대 혹은 최소 한도의 설정
- 상쇄권 제출 한도의 확대 혹은 축소
- 배출권 예비분의 추가 할당

24



# 3. 배출권 시장의 유동성 조절기구에 대한 고찰



### 가격안정화시스템: 평가기준 간 비교

### ❖ 단기적 배출권 가격의 지지

 단기간 가격 급등락에 따른 평가손익으로 상품투자자 입장에서 자산으로써의 가치 절하

### ❖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가격수준에 대한 신호

▶ 청정기술 혹은 오염저감시설에 대한 투자 유인과 관련

### ❖ 기업 경쟁력에 대한 영향

▶ 가격의 변동성에 따른 불확실성 및 비용측면으로서의 배출권 구매

### ❖ 국제현약과의 조화

■ 국제협약의 경우, 국가별로 절감해야 하는 온실가스 총량을 할당

### ❖ 국제 배출권 시장과의 연계성

■ 가격 안정화 정책이 독립적으로 결정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측면

26



### 가격안정화시스템: 평가기준 간 비교

### ❖ 투기적 수요에 대한 저항성

■ 공표된 가격변동폭(band)이 투기적 수요를 불러일으키게 될 가능성

### ❖ 재정에의 영향

- ▶ 가격변동 허용폭 유지에 따른 재정에의 악영향
- ▶ 양적 개입일 경우 재정에의 긍정적 영향

### ❖ 시장 개입의 신속성

국회의 동의를 요한다거나 시행에 이르기까지 여론 수렴과정

### ❖ 규제의 충격

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결정되어야 시장에 대한 충격을 줄일 수 있고 가격 결정에 대한 교란을 최소화

자본시장연구원
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

# 가격안정화시스템: 시스템 간 비교

평가기준	배출세	가격 상한제	가격 하한제	상하한제	일시적 총량 조정	항구적 총량 조정	중앙 은행 제도
배출권 가격의 지지	+	+	+	4	@	+	+
기업 경쟁력에 대한 영향	0	s <del>å</del>	<b>3</b> 1	@	=	33.5	<b>3</b>
국제협약과의 조화	SE.	@	@	<b>SE</b>	0	Ŧ	+
국제 연계성	240	=	<b>8</b> 80	345	0	0	@
투기적 수요에의 저항성	0	5	5	<b>SE</b>	0	0	+
재정에의 영향	0 <b>4</b> 0	<b>*</b>	<b>8</b> 89	@	0	0	0 <b>4</b> 0
시장 개입의 신속성	557	Ħ	83	550	+	Ł	a <del>d</del> i
규제의 충격	82	9	120	22	В	-	146

주: (-) 부정적 영향, (0) 중립적 영향, (+) 긍정적 영향, (@) 불확실한 영향

28



# 탄소중앙은행 모델 관련 논의

국가	명칭	출처	역할
	Carbon Bank	Mckibbin 등 (2002)	<ul><li>호주 중앙은행을 벤치마크</li><li>배출권 중앙은행이 배출권 인쇄 및 판매</li><li>정치적 영향을 제거한 독립 기관</li></ul>
	Carbon Bank	Garnaut 등 (2011)	• 필요한 수준의 재량권 부여 • 5년 기간동안의 재량권 행사 범위 부여 • 환경 당국에 대한 조언 및 협조 • 거래시장의 감독 및 조사
	Climate Change Authority (유동성조절 기관) Clean Energy Regulator (감독기관)	The Austrialian Gov't climate change plan (2011)	장기적 배출 총량 달성을 위한 단기간의 배출 한도 검토 및 조정     가격 형성 과정에 대한 조사 행위
영국	Carbon Bank	Taylor 등 (2011)	<ul><li>배출권 할당 담당함으로써 정치적 영향력 제거</li><li>유럽정책위원회에 대한 조언 및 보좌</li></ul>
미국 Carbon Market Efficiency Board		Lieberman- Warner Bill (2008)	• 미국 연방준비은행을 벤치마크 • 시장 정보에 대한 조사 • 시장 이상징후 시 광범위한 개입조치 가능 • 가격 통제

자료: Sustainable prosperity (2011)



# 중앙은행 시스템과의 유사성

### ❖ 통화정책이 처한 환경과의 유사점

- 정부와 민간과의 동태적 불일치성(dynamic inconsistency)
  - 정책 담당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계획 수립 당시 가장 적합한 정책 수준이 시간이 흐른 후에는 더이상 최선의 정책이 아닐 수 있음
  - 높은 배출권 가격을 예상케 만들고 오염물질 저감시설의 설치를 유도한 다음 실제로는 배출권 공급을 늘려 산업계의 비용부담을 덜어주는 방식
- 투자의 옵션가치
  - 투자는 비가역적(irreversible) 속성
  - 통화정책 방향이 불확실한 상황 하에서 매몰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투자 결정이라는 옵션가치를 포기할 이유가 없게 된다. 즉 투자는 불확실성이 제거될 때까지 유보
  - 배출권거래법에 따르면 시장상황에 따른 시장 안정화 조치가 허용되어 잠재적 불확실성 내포

### ❖ 배출권의 법적 성격

■ 화폐와 같은 자산으로서의 재산권 v.s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허가권

30



### 중앙은행 시스템과의 유사성

### ❖ 기존의 실물상품시장(Commodity markets)과의 비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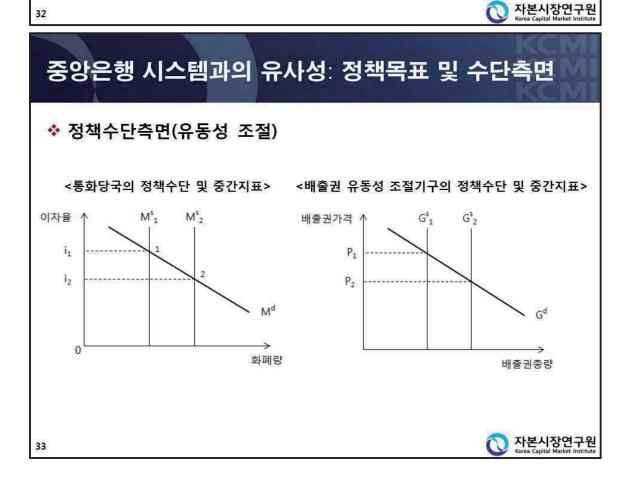
- 유사점
  - "사용" 및 "소비" 과정을 거쳐 시장에서 "퇴장"
  - 주식 및 채권과는 달리 현금흐름이 존재하지 않아 순전히 수급에 따른 가치평가
- 다른점
  - 에너지/곡물/금속 등 일반상품들의 공급은 생산이 제한되어 있거나 공급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반해, 배출권은 법정화폐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일방적 발권력을 보유
  - 저장비용(Storage Costs)의 여부
  - 환경당국은 통화정책과 유사하게 배출권으로부터 주조차익(seigniorage)

### ❖ 정책목표 및 수단측면

💌 ....계속.....

지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

# 중앙은행 시스템과의 유사성: 정책목표 및 수단측면 ❖ 상충되는 목표(배출량 통제와 경기부양) <통화당국의 필립스 커브> ○ 전염적인플레이션을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이 기내출권가격 하황안정기대심리 실업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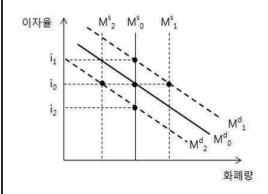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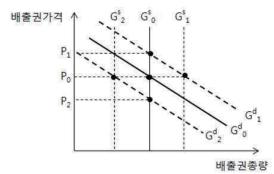
# 중앙은행 시스템과의 유사성: 정책목표 및 수단측면

### ❖ 정책수단측면(유동성 조절)

### <통화당국의 정책수행 방식>

<배출권 유동성 조절기구의 정책수행 방식>





34



### 중앙은행 시스템과의 유사성 및 차이점

### ❖ 정치적 독립의 필요성

- 화폐가치 안정을 위한 방법으로 금본위제가 폐기된 대신, 중앙은행이 정치적 영향에서 독립하여 화폐가치를 보존
- 산업계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경기 부양을 원하는 정치권에서는 당연히 낮은 수준의 배출권 시장가격 형성 희망

### ❖ 최종 대부자(lender of last resort)의 기능

- 금융위기 때마다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으로 시장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민간의 신용경색에 대한 해결사 역할
- 법적 권한을 가진 유동성 조절기구의 존재 자체만으로 배출권 시장의 과열과 산업계의 부담 방지

### ❖ 감독권: 발행, 매개, 거래, 사용단계 대상

- 중앙은행 혹은 별도의 감독기구가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위해 시장 감시의 역할
- 유럽 배출권 시장의 경우 다양한 방식의 시장조작 및 부정행위가 발각된 사례 존재 (중복 사용, 상쇄 프로젝트를 명목으로 한 자금도피 등)



## 중앙은행 시스템과의 유사성 및 차이점

### ❖ 중앙은행 시스템과의 상이점

- 정책 시점의 차이
  - 채권시장이 선진화된 시장에서는 통화정책의 전달경로(단기-중기-장기 채권시장) 를 통해서 수년 안에 통화정책의 완화 및 긴축의 효과
  - 온실가스의 축적으로 인한 영향이 정책의 효과로 나타나기까지는 예측할 수 없는 시간이 소요
- 유동성 조절 수단
  - 통화(확대)정책의 ① 통화안정채권 환매, ② 환매조건부채권 매입, ③ 정부로의 납세 및 대출 혹은 국채 매입, ④ 원화를 지급하는 통화스왑 등 채권과 화폐의 교환
  - 유동성 확대도 유동성 조절기구가 배출권 공급하는 배출권과 화폐의 교환

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

36

### 탄소중앙은행의 지배구조모델

### <유동성 조절기구의 지배구조>



### 독립된 위원회

장기적인 배출 총량에 대한 조언, 규제대상 산업의 범위 결정, 상쇄제도 범위, 회 계처리 방안, 국회에 대한 연례보고 등



탄소배출권 유동성 조절기구 (탄소중앙은행)

배출권 시장 감시, 입법화된 시장규정 적용, 시장개입, 배출권시장 관련 리서치

자료: Ross Garnaut (2011)에서 변형

자본시장연구원
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

# 4. 한계 및 시사점



# 배출권 시장에서 중앙모델의 한계

- ❖ 양적 불확실성 해소라는 cap-and-trade의 장점만 훼손할 가능성
- ❖ 너무 잦은 빈도의 시장개입이나 매매는 시장의 신뢰성을 훼손하게 됨
- ❖ 규칙이 아닌 자의적인 시장운영 혹은 재량적 개입의 가능성
- ❖ 정치적 독립성 결여
- ❖ 환경문제로 인한 후생손실을 객관적 지표화하기 어려움
- ❖ 재정적 부담: 가격하락으로 인한 배출권 매입 시
- ❖ 실제 제도화되어 실행된 사례가 없음

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

# 시사점

- ❖ 배출권 시장의 태생적 한계에 주목하였음
  - 배출권의 공급과 유사한 시스템을 가지는 통화정책과의 비교
  - 배출권 시장의 안정을 가져올 방안에 대해 연구
    - 유동성 조절기구를 통한 시장의 미세조정
- ❖ 배출권의 유통원리가 화폐와 매우 유사
  - → 중앙은행식 모델을 따를 것을 제시
  - 유동성 조절기구의 신뢰성이 담보
  - 정치적 중립성 및 의사결정 위원회 구성이 필요

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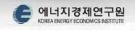
# 제 2 세션

기후변화협상 동향 및 전망-신기후체제 협상 중심으로

발표자: 정윤경 (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)

# 기후변화협상 동향 및 전망 - 신기후체제 협상 중심으로

2014년 08월 08일 에너지경제연구원 정윤경 부연구위원



# 현 기후체제의 구조

- 선-개도국 간 감축의무 차별화 명확
  - 현 교토체제 하에서는 선진국(부속서 [국가)만 법적 구속력 있는 감축의무 부담
    - 단, 미국은 교토의정서 불참. 일본, 뉴질랜드, 러시아, 캐나다 2차 공약기간('13~'20년) 불참
  - 반면, 개도국(비부속서 I 국가)은 자발적인 '국가 적정 감축행동'(NAMA)을 통해 참여

	<b>'08-'12</b>	′13-′20	Post-2020
유럽, 호주			
일본, 러시아, NZ	감축의무	감축의무 없음	모든 당사국에
캐나다			동일한 적용
미국	교토의정서 거부	- 감축의무 없음	(의무 여부 미정)
개도국	감축의	무 없음	

# 신기후체제(Post-2020) 협상 배경

- 2011년 더반 당사국총회에서 2020년 이후 새로운 기후 변화체제 협상 개시에 합의
  - 결정문을 통해 2015년 파리 총회에서 "협약 하의 모든 당사국에 적용 가능한 의정서, 또 다른 법적 문서, 또는 법적 효력을 가지는 합의된 결과물"(2015 합의)이 채택될 수 있도록 더반플랫폼 작업 반(ADP)에 작업 위임.
    - 원칙적으로 선-개도국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단일 기후체제
    - 2015년 합의 구성요소에는 감축, 적응, 재정, 기술개발 및 이전, 행동과 지원의 투명성, 능력형성 포함
  - 더불어 2020년 이전의 감축수준 상향 및 새로운 감축 방안 발굴을 통한 감축의욕 제고 포함
- => ADP 협상의 결과물은 2020년 이후 국제기후변화 체제를 규정하는 핵심적인 문서가 될 전망(이호무(2013))



# ADP 협상 논의경과

협상회의	주요 논의 내용(감축 분야 중심)
'12.5월 - 본	ADP 의제 채택, 공동의장 선출
'12.8~9월 - 방콕	Equity, 국가별 상황 등 현재 논의의 근간 표출
'12.12월 - 도하	ADP 협상 일정, workstream 별 주요 논의 요소 채택
'13.4~5월 - 본	상향식 위주의 목표 설정, 감축목표의 종류/특성
'13.6월 - 본	목표 설정 프로세스와 의욕 향상 방안, 향후 협상 방식
'13.12월-바르샤바	`의도하는 국가 결정 공약(INDC)' '15년 중 제출 (준비된 당사 국은 ¼분기까지), COP20까지 사전 정보 확인 요청
'14.3월 - 본	컨택그룹(contact group) 설치에 합의
'14.6월 - 본	INDC 범위, 감축공약 제출시기, 형태, 수준 및 제출 이후 검 토절차 논의, 의장단 사전 정보에 대한 결정문 초안 제시



# ADP 협상 주요내용: INDC (1)

- 의도하는 국가 결정 공약(INDC\*): 각 당사국이 자국의 (감축) 목표를 자발적으로 설정(bottom-up approach)함을 의미
  - 여러 국가가 INDC는 2015 합의의 기반임을 확인
    - \* INDC: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
- INDC의 범위에 대해 선-개도국간 첨예한 의견 대립
  - 선진국은 감축에만 적용 또는 감축이 핵심이어야 한다는 입장
  - 개도국은 감축 뿐 아니라 6가지 요소에 균형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
    - ▲ 도서국가는 감축, 최빈국 및 아프리카는 적응, 중국 등은 MOI 강조
  - INDC 범위에 대한 유연한 접근 필요: 감축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나 적응 등 여타 요소들도 각국의 결정에 따라 반영 가능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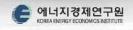
# ADP 협상 주요내용: INDC (2)

- INDC 감축 관련 제출시기, 공약형태, 목표연도, 제출 이후 검토절차 등에 대한 논의 심화
  - (제출시기) 미국, 유럽 등 일부 선진국 및 도서국가만 조기제출 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'15년 ¼ 분기 제출 의지 표명
    - 특히, 선진국은 주요 경제국들의 조기 제출 강조
    - 반면, 개도국은 공약 제출시기에 대한 언급보다 지원 필요성 강조
    - 일부 선진국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국가가 아직 공약설정 초기단계에 있는 것으로 사료됨
    - 감축목표 설정에 있어 주요국이 제출한 공약을 분석할 필요가 있는바,
       이를 고려하여 제출일정 결정
  - (목표연도) 공통된 공약목표연도 설정에 대한 논의 활발
    - 대부분 선진국 2030년 제시, 반면 미국은 2025년을 공식입장으로 주장



# ADP 협상 주요내용: INDC (3)

- (공약형태) 선-개도국의 공약형태 차별화 문제
  - 대다수 국가가 개도국의 감축 공약형태에 있어 절대량 감축, BAU, 원단 위 목표, 기타 저탄소정책 및 조치 등 다양한 옵션 허용
  - 다만, 선진국은 개도국이 지원을 전제로 한 조건부 감축공약만 제출하는 것에는 반대
  - 개도국은 부속서-비부속서 국가 간의 감축 공약형태의 차별화 강조
     \* 부속서 I 국가는 국가단위의 절대량 감축목표 제출해야 하고 기존 감축목표 수준에서 후퇴하지 않아야 함(no backsliding)
  - 감축공약 설정 시 산업경쟁력, 국제적 위상, 감축 잠재량 등 국내 여건 및 협상 논의 등 국제 동향을 반영한 감축형태 및 수준 결정 중요
    - \* 현재 감축형태 중 BAU 방식이 가장 유연하나 일부 선진국은 투명성에 대한 의문 제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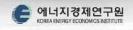
# ADP 협상 주요내용: INDC (4)

- \* BAU 방식 채택 시 감축목표 설명을 위한 철저한 사전준비 및 검증 필수
- 감축공약 형태는 각국이 국가 여건(national circumstances) 및 능력에 맞게 선별하는 것이 바람직
-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제출시기, 목표연도, 공약형태에 관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상태임.
- 감축공약 제출 후 협의기간/검토절차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었으나, 절차의 목적, 성격, 개시시점, 조정가능성 등구체적 사항에 대한 논의는 초기단계
  - (목적/성격) 일부 선진국은 글로벌 목표달성 차원에서 전체적인 감축의 욕의 적절성 및 개별 공약의 형평성을 평가하는 절차로 이해하는 반면, 다수 국가들은 상호 공약의 이해증진 및 투명성 제고 강조
  - (조정/재설정 가능성) 각국 감축의욕의 비교-평가 절차로 이해하는 경우 조정 가능성 지지. 현실적으로 이미 제출된 감축공약 수준의 변경은 어려움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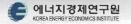
# ADP 협상 주요내용: INDC (5)

- (기간) 제출 후부터 2015년 합의 전까지, 2015년 합의 후 개시, 일정요건 (critical mass, thresholds 등) 충족시 개시 등 다양한 입장 존재
- (기타) 감축 이외의 다른 요소에의 적용문제, 검토절차의 주체 등
- 감축공약에 대한 이해 증진과 전체적 감축의욕 수준 파악 위한 절차
- 당사국들의 폭넓은 참여를 확보하고 각국이 의욕적인 목표를 제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 필요
- 금년 리마 총회에서 각국의 INDC에 수반되어야 할 사전 정 보목록에 대한 결정 필요
  - 당사국의 공약준비 촉진, 공약의 투명성 제고 및 이해증진을 위해 사전적 정보 목록이 조속히 확정되어야 함.
  - 선진국은 감축공약의 정량화를 위한 충분한 사전 정보 제출의 필요성 강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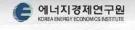
# ADP 협상 주요내용: INDC (6)

- 단, 대체적으로 사전 정보 제출의무는 감축분야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 장
- 감축형태에 따라 제출해야 할 정보목록이 달라질 수는 있으나 부속서 체제/국가 분류에 따른 차별화는 반대
- 시장 메커니즘, 토지이용 부분의 회계에 대한 정보제출의 중요성 강조
- 개도국은 부속서 체제에 입각한 선-개도국간 정보 목록의 차별화 주장
  - 사전 정보목록 요소별로 다를 수 있으나 감축분야에 한정된 것은 아님.
  - 선진국의 지원에 대한 사전 정보 제출 주장
- 사전 정보목록을 감축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국가에 해당되는 최
   소한의 공통정보와 여타 추가정보로 구분



# ADP 협상 주요내용: INDC (7)

- 공약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해 최소한 감축유형, 공약기간, 기준년도, 감축대상 온실가스 및 부문, 예상감축량, 주요가정, 방법론 등에 대한 정보 제공 필요
- 추가정보는 각국이 자율적으로 공약형태 및 국가여건에 따라 제출
- 정보 내용 및 작성작업이 개도국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아야 함.
- 선진국 및 국제기구의 개도국에 대한 기술적 지원 및 협력 필요
- 당사국 간의 INDC 감축공약 차별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선-개도국 공감대 형성
  - 부속서 체제 유지, 새로운 국가 분류법(선진국, 개도국, 중간소 등 국가, 취약국 등), 공약 형태/감축수준/법적성격에 따른 차별 화 등 여러 차별화 방안 존재



# ADP 협상 주요내용: INDC (8)

- 단, 선진국은 부속서 체제에 기반한 이분법적 국가 분류체계 (유지)반대
  - 미국은 각국이 독자적으로 자국의 여건을 반영하는 자체적 차별화(self-differentiation) 주장
  - 반면, 유럽은 전체적인 공약수준의 비적절성(inadequacy) 우려, 이에 대해 유보적 입장
  - 협약의 '공동의 차별화된 책임(CBDR)' 원칙을 변화하는 여건을 반영한 동태적(dynamic) 맥락에서 해석해야 함을 강조
- 개도국은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을 강조하며 부속서 체제 유지 주장
  - 협약 원칙에 따라 선진국은 역사적 책임에 기인하여 주도적 역할
  - 개도국의 감축공약은 선진국의 재정 및 기술지원을 조건으로 함
  - 공약의 형태/수준/법적성격에 대해서 차별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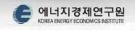


# ADP 협상 일정

연도	분기	주요 일정
	1/4	협상문 주요요소 구체화 시작(3월 회의)
	2/4	장관급회의(6월 회의)
2014	3/4	반기문 총장 주최 기후변화 정상회담(9월)
	4/4	ADP 추가 회의, IPCC 5차보고서 완간(10월) 장관급회의, 협상문 주요요소 확정(12월 회의)
	1/4	'준비된 국가'의 post-2020 목표/행동 의향 발표
	2/4	협상문 준비(5월)
2015	3/4	협상문 수정 작업
	4/4	주요국 Post-2020 목표 확정 예정(12월 회의 이전) <b>협상 타결(12월 회의)</b>

출처: 이호무(에경연) 작성

- 올해 9월 23일에 개최되는 반기문 총장 주최 기후정상회의가 기후변화협상에 중요한 모멘텀 제공 가능



# 향후 협상 전망

- 선진국-개도국이 다양한 의제에 있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앞으로도 계속 협상이 어려울 전망
  - 개도국: CBDR 원칙에 부합하는 선-개도국 차별화 유지
  - 선진국: 차별화 제한을 통해 주요 배출국의 국가 단위 감축목표 제출 유도
  - 모든 당사국에 적용되는 단일 기후체제 하에서의 CBDR 원칙에 대한 개도 국-선진국 간의 합의점 모색 필요
- 공동의장단에 대한 신뢰형성 여부가 협상의 진전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
  - 의장단에 대한 신뢰회복은 협정문안 작성이 의장의 주도 하에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(당사국 주도에 비해 협상진도의 가속화 예상)
  - 현재 선진국은 공동의장단을 지지하는 한편, 개도국 사이에서는 의장단에 대한 불신 팽배
  - 10월 회의 대비 의장단이 게재한 ADP 의제전반 개요문서와 정보 관련 결정문 초안이 선-개도국 의사를 균형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가 관건





# 참고자료

• 우리나라 관련 주요 지표

지표	수치	기준년도	순위	비고
국가 배출량	5.80억t	2010	7	1인당: <b>19</b> 위(11.52t/인)
국가 누적배출량	108.4억t	1850-2008	19	1인당: <b>55</b> 위(222.9t/인)
1인당 GDP	\$29,786/인	2011	30	비부속서 I 국가 중 8위
CO <sub>2</sub> 배출 원단위	0.513t/1천\$	2010	60	OECD 34개국 중 28위
<b>1인당 배출 증가량</b> ('90년 대비)	6.5t/인	2011	1	비율로는 중국이 227%로 1 위

출처: 이호무(2013)

